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협조사항 알림

1. 관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546(2022.6.8.)호

2.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및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변경 등

나. 시행일 : '22. 6. 8.(수)(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구 분	기 존	변 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인도적·공무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6.7일까지 발급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조정(내국·장기외국인)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검사 *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대기

3. 대학 및 관련기관에서는 위 변경사항 등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외입국 유학생 등 관련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국·영문). 끝.

교육부장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고등외국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주무관

이종민

행정사무관

홍용환

코로나19대응 전결 2022.6.8.
학교상황총괄 신광수
과장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 ((2022.6.8.)) 접수 ()
과-1705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 / <https://www.moe.go.kr>
동)

전화 044-203-7156 전송 044-203-7023 / miniedu@korea.kr /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